

2019년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3. 12. (화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건(안건번호 제2019-1447호~146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게시물 중 심의 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449호)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성가 악보 파일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450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견 없으며,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1447호~146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2건임

우선 안전번호 제2019-1447~1448호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2019-1449호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이나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며, 안전번호 제2019-1450호는 성가(聖歌) 악보 파일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 마지막으로 안전번호 제2019-1451~1468호는 웹하드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47~1448호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페 내 해당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카페 내 한 이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복제한 강의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임
해당 자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관계자는 강사가 직접 강의용 시험문제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강의 자료를 불법 복제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취업시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집만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 않고, 문제집과 동영상 강의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고 있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시장의 특성상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받으면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장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 A 위원 : 이런 경우 해당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는 공식 사이트 내부 관계자의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내부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강의를 수강한 자라면 문제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있음
해당 강의 사이트 관계자는 전문위원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자료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심의대상 게시물과 시정권고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447~1448호는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강의 운영자가 시정권고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49호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이나 심의시점에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페 내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일

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카페 내 한 이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복제한 미국 공인회계사(AICPA) 강의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들은 심의일 현재 삭제된 상태임 (해당 자료를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보여주면서)해당 자료는 현재 유료로 판매 중임

- B 위원 : 저작권법상 전송개념에 비추어 일단 전송이 되었다면 현재 삭제되었더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를 둔 법 취지상 타당함

또한 한 번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은 권리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게시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삭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시정권고와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블로그와 관련된 안전 중에는 삭제된 게시물 외에도 비공개 처리된 게시물이 있었는데,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 게시물이었는데 심의 시점에는 게시물이 공개로 전환된 경우도 있었음

- A 위원 : 삭제된 게시물 보다는 비공개 처리된 게시물에 대하여 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B 위원 : 시정권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449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정 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심의 시점 현재 삭제되어 있으므로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50호 성가 악보 파일 게시물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블로그 내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개인 블로그에 성가 악보 5개를 올린 사안임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만으로는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악보를 찾을 수 없거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와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없었음
- A 위원 : 게시자가 편곡한 악보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자가 편곡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심의대상 성가의 악보는 선교단체, 교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악보 등 버전이 다양하여 어느 것이 원 저작물인지 확인이 어려움
- B 위원 : 해당 블로그는 상업적인 성격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고려하였을 때 해당 게시물까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A 위원 : 기독교 사회에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성가나 가스펠의 특성상 저작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1450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만장일치로 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51~1468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451~1468호 게시물은 모두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A 위원 : 특히 안전번호 제2019-1463호 게시물의 영화 '말모이', 안전번호 제2019-1464호의 영화 '뽕반'은 최신 영화인데, 보호원이 해당 웹하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보호원에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온라인대응팀에서 자체 조사한 것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65~1468호 게시물의 영화 '기묘한 가족'의 개봉일자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영화는 2019. 2. 13.경 개봉한 것으로 확인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51~1468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49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45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나머지 안전번호 제 2019-1447호~1448호 및 제2019-1451호~146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19.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